

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지침 등 2개 예규 일부개정예규

제1조(「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지침」의 개정) 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Ⅱ 제2호나목 중 “기성금”을 “기성금(이미 진행된 작업 부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)”으로 한다.

Ⅲ 제1호나목(2) 중 “기성부분의”를 “기성부분(이미 진행된 작업 부분)의”로 한다.

V 중 “2024년 4월 20일”을 “2027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제2조(「수탁·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」의 개정) 수탁·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 제목“(재검토기한)”을“(유효기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2022년 7월 21일”을 “2027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(㉓) 중 “6하 원칙”을 “육하원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1. (생략)</p> <p>2. “납품“과 “납품대금“의 의미가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“납품대금”이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납품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, 선급금이나 <u>기성금</u>도 포함한다.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</p> <p>----- <u>기성금(이미 진행된 작업 부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)</u>---</p>
<p>1. 약정서 및 수령증 발급(법 제 21조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위탁기업의 물품 수령증 발급 의무(법 제21조제2항)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즉시의 의미</p> <p>“즉시”란 제조·수리·가공·용역 위탁의 경우 ‘물품등을 받은 날’을 의미하고, 공사위탁 또</p>	<p>1. -----</p> <p>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(1) (현행과 같음)</p> <p>(2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는 물품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위탁기업이 물품이 제조된 장소에서 검사하도록 한 제조위탁의 경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가 있는 때를 의미한다.

(3) (생략)

2. 납품대금 조정협의 개시 및 진행(법 제22조의2제7항)

가. (생략)

나.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요건 확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이 지침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

----- 기성부분(이미 진행된
작업 부분)의 --.

(3)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-----.

2024년 4월 20일까지 효력
을 가진다.

2027년 6월 30일-----
-----.

수탁·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재검토기한) 이 규칙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<u>2022년 7월 21</u>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34조(유효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6월 30</u> <u>일</u>-----.</p>